

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2002-28

제출년월일 : 2002. 3

제 출 자 : 김제시장

1. 개정 이유

시중 융자금 대출 이자율 하락 및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의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융자금 이자율 하향 조정으로 융자대상자인 농어민의 금융 부담을 경감코자 농가부담이자를 5%에서 4%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금의 농가부담이자를 4%로 조정하고, 금리 차액은 시에서 보조함(안제4조2항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규정 :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43402-37(2002. 2. 5)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융자금 이자율 조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 등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2)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: 여

3) 입법예고(2002. 2. 25. ~ 3. 18 : 특이사항 없음)

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2항중 농가부담이자를 5%를 4%로 개정한다.

부 칙

(경과조치) 제4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2년 2월 5일 이후 용자를 받은 농가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융자한도 및 이율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자금의 대출금리는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로 하되, 농가부담이자를 <u>5%</u>로 하고, 금리차액은 시에서 보조한다. 다만, 연체수수료 부담은 농가부담으로 한다.</p> <p>③~⑤(생 략)</p>	<p>제4조(융자한도 및 이율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<u>4%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~⑤(현행과 같음)</p>